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6,000,000	12,480,000
일반회계	404,632,442	12,138,973
특별회계	11,367,558	341,027
기타특별회계	11,367,558	341,027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110,354	33,311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361,128	40,834
건축진흥특별회계	559,000	16,770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477,700	14,331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82,000	17,460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57,303	4,719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3,410	1,902
드림빌특별회계	1,762,434	52,873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426,019	42,78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68,210	116,04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53,204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